

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(2020. 12. 17.)에서
의결된 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12월 18일

고흥군의회 의장 송 영



규칙 제2020-31호

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

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고흥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고흥군의회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에”를 “고흥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”로, “의회의원”을 “고흥군의회 의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서명, 날인하여야”를 “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”로 하며, “명시하여야하고”를 “명시하여야 하고”로, “첨부 할 수 있다”를 “첨부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의회 의장”을 “고흥군의회 의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2개이상 또는 2개기관”을 “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이유있다고”를 “이유 있다고”로, “정원을 회부할”을 “청원을 회부할”

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상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상임위원회”로, “청원심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회부한다”를 “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접수년월일”을 “접수연월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특별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부터”를 “청원이 회부된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”로, “없는한 폐회중”을 “없는 한 폐회 중”으로, “10일내”를 “10일 내”로, “하며 이 기간내”를 “하며, 이 기간 내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”를 “전문가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의원에게 제1항”으로, “당해의원”를 “해당 의원”으로, “의원으로 하여금”을 “의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”를 “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”로 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이해 관계자간”을 “이해관계자 간”으로, “청원목적”을 “청원 목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등”을 “등으로 인하여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부의할 필요가 없다고”를 “부의하지 않기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휴회중”을 “휴회 중”으로, “1/3이상”을 “3분의 1 이상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제1항의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지체없이”를 “지체 없이”로 한다.

제14조 전단 중 “서명날인을 한”을 “기명날인 또는 서명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서명 날인한다”를 “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”로 한다.

제15조 제목 중 “소개의철회와 청원의 효력”를 “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후단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”을 “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는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고흥군의회</u>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청원서의 제출) ①<u>의회</u>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<u>의회의원</u>(이하 "의원" 이라 한다)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를 기재하고 <u>서명, 날인</u>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<u>명시</u>하여야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<u>첨부</u> 할 수 있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제3조(청원서 보완요구) <u>의회의장</u>(이하 "의장" 이라 한다)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불수리 사항의 통지)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동일기관에 <u>2개이상</u> 또는 <u>2개기관 이상</u>에 제출된 것</p> <p>4.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조 (목 적)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고 흥 군 의 회 에</p> <p>-----</p> <p>제2조(청원서의 제출) ①<u>고흥군의회</u>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----- <u>고흥군의회</u> 의원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</p> <p>-----</p> <p>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명시하여야 하고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첨부할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청원서 보완요구) <u>고흥군의회</u> 의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이의신청) ①(생략)</p> <p>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<u>이유있다고</u>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그 <u>정원을 회부할</u>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,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<u>상임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에 회부하거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<u>청원심사특별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구성, 회부한다.</p> <p>②청원요지에는 청원자의 주소, 성명, 청원의 취지, 소개의원의 성명과 <u>접수</u> 년월일을 기재한다.</p> <p>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<u>특별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에 회부할 수 있다.</p> <p>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<u>10일내</u>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이의신청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이유</u> ----- <u>있다고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청원을 회부</u></p> <p><u>할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6조(청원서 회부와 심사) 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상임</u></p> <p><u>위원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청원심사특별</u></p> <p><u>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.</u></p> <p>②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 (생략)	제7조 (현행과 같음)
제8조(청원인 등 진술) 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<u>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</u> 진술을 들을 수 있다.	제8조(청원인 등 진술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전문가----- -----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제9조(제척과 회피) ①(생략)	제9조(제척과 회피) ①(현행과 같음)
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<u>제1항의 사유</u>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<u>당해의원</u> 이 청원의 심사,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<u>의원</u> 으로 하여금 심사,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.	②----- <u>의원</u> 에게 제1항----- -----
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<u>당해 의원</u> 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<u>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.</u>	----- <u>해당 의원</u> ----- -----
④(생략)	<u>의원</u> 에게 --- -----
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 (생략)	-----
1.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<u>이해관계자간</u> 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<u>청원목적</u> 이 달성된 경우	③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<u>본회의</u>
2.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	<u>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</u>
3. (생략)	④(현행과 같음)
	제10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) (현행과 같음)

(별지 제1호서식)

청원 소개의견서

청원건명			
청원인	주소		
	성명	생년월일	
소개의원	(서명 또는 인)		
소개년월일			
<u>소개의견</u>			

(별지 제2호서식)

청원철회요구서

청원건명			
청원인	주소		
	성명	생년월일	
소개의원	(서명 또는 인)		
청원제출일자		청원 철회일자	
<u>철회요구사유</u>			